

의안번호	제 417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9월 일 (제283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9월 3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7
----------	-----

제출연월일 : 2009년 9월 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조기조성 및 식약청의 식·의약품 업무 지방이관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부 직종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① 정원의 총수 조정 : 2,781명 → 2,794명 (증1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426명 → 1,439명 (증13명)
  - 증16명 (일반직 4급 +2, 5급 이하 +12, 연구사 +2)
  - 감 3명 (기능직 △3)

※ 소방본부 및 소방서,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는 변동 없음.

#### ②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

- 일반직 : 증 14명 (1,051명 → 1,065명)
  - 4급 증 2명 (59명 → 61명) ※ 본청 4급 +2 (42명→44명)
  - 5급 이하 증 12명 (982명 → 994명)
- 연구직 : 증 2명 (136명 → 138명)
  - 보건연구사 증 2명 (115명 → 117명)
- 기능직 : 감 3명 (263명 → 260명)

※ 별정직, 지도직, 소방직, 교육공무원은 변경사항 없음.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781명”을 “2,794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1,426명”을 “1,439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분 청	의 회	직속기관	사 업 소
총 계	2,794	-			
정 무 직 계	1	1			
도지사	1	1			
일 반 직 계	1,065	-			
2-3급	1		1		
3급	8	7		1	
3-4급	1	1			
4급	61	44	7	4	6
5급이하소계	994	-			
별 정 직 계	21	-			
1급 상당	1	1			
5급상당이하소계	20	20			
연 구 직 계	138	-			
연 구 관	21			18	3
연 구 사	117	-			
지 도 직 계	24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8	-			
소 방 직 계	1,243	-			
소 방 정	10	2		8	
소방령이하	1,233	-			
교육공무원계	42	-			
총 장	1			1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30			30	
조 교	11	-			
기 능 직 계	260	-			

※ 연구관, 지도관, 교수 등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정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81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26명</u></p> <p>2. ~ 4.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u>2,794명</u>으로 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1,439명</u></p> <p>2. ~ 4.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⑤(생략)